

#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1. 의결주문

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승진심사 시행의 일환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여 지방법원 관내 각 지원 소속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함

## 3. 주요내용

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을 “3인 이상 7인 이하”에서 “3인 이상 12인 이하”로 변경하고,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관내 각 지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35조의3제4항)

## 4.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## 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3제4항 중 “3인 이상 7인 이하”를 “3인 이상 12인 이하”로, “지명한다.”를 “지명하되,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관내 각 지원 소속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” 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	
연 락 처	(02) 3480-1937